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2. . . (제 회)	

산지관리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2.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농림어업인등의 산지일시사용을 통한 관상수 재배면적을 확대하여 경영 규모화를 지원하고, 산지전용신고 등에 적용되는 임업인의 범위에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임야를 대상으로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자’를 포함하여 원활한 임업경영 활동을 지원하는 등 산지규제를 완화하고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숲경영체험림을 임업용산지의 허용행위, 산지전용신고 대상으로 규정(안 제12조제2항제1호, 안 제17조제2항제3호, 별표 3)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개정('22.6.10, 시행 '23.6.11)으로 숲경영 체험림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산지관리법령의 적용에 있어 임업용산지의 허용행위, 산지전용신고 대상으로 규정

나.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통한 관상수 재배면적 확대(안 제12조제13항제5호및제7호, 별표3의3)

농림어업인등의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통한 관상수 재배면적을 일반임산물의 재배허용면적과 동일하게 5만 제곱미터까지 허용하여 경영의 규모화를 지원

다. 풍력발전시설 산지일시사용 허가기간 연장(안 제18조의4, 제27조, 제29조의2, 제30조의2, 제31조의2)

풍력발전시설 산지일시사용허가기간을 현행 최대 20년에서 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산지일시사용허가 기간의 연장이 타당한 경우 최초 허가기간을 포함하여 30년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함

라. 채석단지 변경지정시 채석경제성평가 대상 완화(안 제39조제5항)

채석단지 지정면적 변경에 따른 채석경제성평가 대상을 토석채취허가와 같이 현행 채석단지로 지정받은 면적의 100분의 10 이상에서 100분의 20 초과로 완화하여 합리적으로 운영

마. 양수발전시설에 대한 구역협의 등 기준 완화(안 별표2, 안 별표4, 안 별표4의2)

낙차 확보 등이 필요한 양수발전시설의 특성을 고려하여 산지에서의 구역협의 및 산지전용허가 시 평균경사도, ha당 입목축적, 보전산지 면적비율, 허가면적의 예외를 적용하도록 함

바. 산지전용신고 등에서 임업인의 범위 확대(안 제12조제1항제2호, 안 별표3, 안 별표3의3)

산지전용신고(별표3) 및 산지일시사용 신고(별표3의3)에 적용되는 임업인의 범위에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임야를 대상으로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자’를 포함하여 원활한 임업경영을 지원

사.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대상 및 면적의 명확화(안 별표5)

- 1) 비고 제5호의 “농림어업인”의 정의가 같은 비고 제3호에도 적용되도록 하고, 농림어업인의 범위에 「농어업경영체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임야를 대상으로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자’를 포함
- 2) 비고 제8호를 신설하여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대상 면적을 대상시설이 설치되는 산지의 면적임을 명확히 규정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특이사항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3. 1월 ~ 2023. 2월)예정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예정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별자치도의 경우는 특별자치도지사
를”을 “(특별자치도의 경우는 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자치시의 경우는
특별자치시장을”로 한다.

제10조제5항 중 “2만제곱미터”를 “10만제곱미터”로 한다.

제12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임업인이”를 “임업인 및 「농어
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임야를
대상으로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자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포함한다)”를 “포함한다), 숲경영체협립”으로 하며, 같은 조 제9항에 제
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13항제5호 본문 중 “품목(관상
수는 제외한다)”을 “품목”으로 하며, 같은 항 제7호를 삭제한다.

7. 「도서관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국립도서관 또는 공립도서관
제17조제2항제3호 중 “제2조제3호·제5호·제8호 및 제9호”를 “제2조제
3호·제5호·제8호·제9호 및 제10호”로, “산림레포츠시설”을 “산림레
포츠시설, 숲경영체협립”으로 한다.

제18조의2제2항제1호 중 “배전시설·전기통신송신시설·풍력발전시설”을
“배전시설·전기통신송신시설·풍력발전시설(진입로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18조의4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광업법」에 따른 광물의 채굴을 위한 산지일시사용기간을 연장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연장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것”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로 하며, 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가. 「광업법」에 따른 광물의 채굴을 위하여 산지일시사용기간을 연장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것

나. 최초의 산지일시사용기간, 기존의 산지일시사용연장기간과 연장받으려는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광업법」 제12조에 따른 채굴권의 존속기간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2.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른 풍력발전시설(풍력발전시설을 위한 진입로를 포함한다.)을 위한 산지일시사용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

가. 기간연장의 타당성에 관하여 법 제22조에 따른 중앙산지관리위원회 또는 지방산지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칠 것

1) 산림청 소관 국유림의 산지 : 중앙산지관리위원회

2) 1) 외의 산지 : 지방산지관리위원회

나. 연장을 받으려는 기간은 최초의 산지일시사용기간, 기존의 산지일시사용연장기간과 연장받으려는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30년을

초과하지 않을 것

제21조제2항제6호 중 “5억원”을 “1억원”으로 한다.

제27조제8호부터 제11호까지를 각각 제9호부터 제12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제18조의4 제3항 제2호에 따른 산지일시사용 기간연장에 관한 사항
제29조의2제1항제2호자목부터 타목까지를 각각 차목부터 파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에 자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자. 제18조의4 제3항 제2호에 따른 산지일시사용 기간연장에 관한
사항

제30조의2제4호의3을 제4호의4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3. 제18조의4 제3항 제2호에 따른 산지일시사용 기간연장에 관한
사항

제31조의2제1항제2호마목부터 아목까지를 각각 바목부터 자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제18조의4 제3항 제2호에 따른 산지일시사용 기간연장에 관한
사항

제39조제5항 중 “10을”을 “20을 초과함을”로 한다.

제46조제1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각 호의 공공법인이 설치하는 수목장립

별표 2 비고 제1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전원개발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원개발사업 중 「전기사업법」 제25조에 따라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된 양수발전시설
별표 3 제4호차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차. 숲경영체험림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제4항에 따른 시설의 종류 및 기준 등에 적합할 것
-----------	---

별표 3 비고 제3호 중 “임업인을”을 “임업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임야를 대상으로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자를”로 하고, 같은 비고 제4호 중 “임업인 및”을 “임업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임야를 대상으로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자 및”으로 한다.

별표 3의2 제1호나목3) 중 “2만제곱미터”를 “10만제곱미터”로 하고, 같은 표 제2호다목 대상시설·행위의 범위란 다목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란 다목2) 중 “것”을 “것(「자연환경보전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심의를 거친 경우는 제외한다.)”으로 하고, 같은 란 3) 중 “것”을 “것(다만, 재해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으로 하며, 같은 란에 8)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란에 가)부터 아)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풍력발전시설(진입로를 포함한다.)

8) 진입로(발전시설 사이의 연결로를 포함한다)의 경우 에는 1)에

서 7)까지 기준을 제외하고 다음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가) 별표 4 제1호의 기준에 적합할 것. 다만, 별표 4제1호 마목 3)·6)·7)·10)의 기준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나) 산지경관 영향 모의실험을 실시하여 경관훼손을 줄이는 대책을 수립할 것(「자연환경보전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제외한다.)

다) 「산림보호법」 제45조의5에 따른 산사태위험지도상 1등급지가 편입되지 아니할 것. 다만, 재해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4항에 따른 산림관리기반시설 중 임도시설의 타당성평가와 설계 및 시설기준에 적합할 것

마) 시설되는 진입로가 임도의 용도로 지속적인 활용이 가능하다고 인정될 것

바) 길어깨·옆도랑의 너비는 각각 0.5미터 이상 1미터 이하로 하고, 절토·성토한 비탈면을 제외한 도로의 유효너비는 4미터 이하일 것. 다만, 대피소, 차돌림곳, 곡선부 등의 유효너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사) 횡단면도상 노폭(비탈면을 포함한다)의 원지반 경사가 35도를 넘는 구간이 전체 진입로의 100분의 10 이하일 것

아) 중단기울기는 20퍼센트 이하일 것(발전시설 사이의 연결로
는 제외한다.)

자) 공사착공일로부터 「전기사업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사업
시작을 신고하고 3년이 되는 날까지 산지보전협회가 수행하
는 현장점검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사업계획에 반영할 것

별표 3의3 제3호나목을 삭제한다.

별표 3의3 제6호가목 대상시설·행위의 범위란 가목 중 “품목(관상수는
제외한다)”을 “품목”으로 하고, 같은 란에 2)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
다.

다만, 관상수는 재배지역이 법 제4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공익용
산지인 경우에는 1만제곱미터 미만이어야 한다.

별표 3의3 제6호나목 대상시설·행위의 범위란 나목을 삭제하고, 같은
란 나목 설치지역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3의3 제8호카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카. 과수류의 임간재배	산지전용· 일시사용제한 지역이 아닌 산지	임업인이 재배하려는 경우에 한하며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는 것 1) 평균경사도가 25도 미만일 것 2) 재배면적이 5만제곱미터 미만일 것 3) 임간재배에 해당할 것(임간배재 를 위한 숙아베기를 제외하고는 기존 임목의 벌채를 수반하지 않아야 한
--------------	---------------------------------	---

		다.)
--	--	-----

별표 3의3 비고 제4호 중 “제1호에서 “임업인“이란”을 “제1호 및 제8호에서“임업인“이란”으로, “임업인을”을 “임업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임야를 대상으로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자를”로 하고, 같은 비고 제5호 중 “임업인 및”을 “임업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임야를 대상으로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자 및”으로 한다.

별표 4 제1호나목의 세부기준란 본문 중 “산지 또는”을 “산지(「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거친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으로 한다.

별표 4 비고 제1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전원개발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원개발사업 중 「전기사업법」 제25조에 따라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된 양수발전시설
별표 4의2 제1호에 타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타. 「전원개발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원개발사업 중 「전기사업법」 제25조에 따라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된 양수발전시설
별표 5 비고 제5호 중 “비고”를 “비고 제3호 및”으로, “임업인 및”을 “임업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임야를 대상으로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자 및”으로 하고, 같은 비고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대상 면적은 이 표에 규정된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하는 대상시설이 설치되는 산지의 면적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광물의 굴진채굴 시 산지일시사용허가 면적 확대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산지일시사용허가를 신청하거나 산지일시사용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산지에서의 지역등의 지정 · 결정에 관한 협의절차)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산림청장, 특별시장 · 광역시장 · 특별자치 시장 · 도지사 · 특별자치도지사 (이하 “시 · 도지사”라 한다) 또 는 시장(특별자치도의 경우는 <u>특별자치도지사를</u> 말한다. 이하 같다) · 군수 ·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협의하려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은 협의요청서에 농림축산식품 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 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② (생 략)	제6조(산지에서의 지역등의 지정 · 결정에 관한 협의절차) ① -- ----- ----- ----- ----- ----- <u>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자치시</u> <u>의 경우는 특별자치시장을</u> --- ----- ----- ----- ----- ----- -----.
제10조(산지전용 · 일시사용제한 지역에서의 허용행위) ① ~ ④ (생 략) ⑤ 법 제10조제8호에서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갱내채굴”이란 산지의 일시사용면적이 갱구 및 광물의 선별 · 가공시설을 포함	제10조(산지전용 · 일시사용제한 지역에서의 허용행위)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 ----- ----- -----

하여 2만제곱미터 미만인 굴진 채굴(掘進採掘)을 말한다.

⑥ ~ ⑧ (생략)

제12조(임업용산지안에서의 행위 제한) ①법 제12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생략)

2.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호의 임업인(「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림경영계획의 인가를 받아 산림을 경영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같은 조 제2호 및 제3호의 임업인이 설치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가. ~ 라. (생략)

3. 삭제

4.·5. (생략)

②법 제12조제1항제3호에서

--- 10만제곱미터 -----
-----.

⑥ ~ ⑧ (현행과 같음)

제12조(임업용산지안에서의 행위 제한) ①-----

-----.

1. (현행과 같음)

2. -----

----- 임업인 및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임야를 대상으로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자가 -----
--

가. ~ 라. (현행과 같음)

4.·5. (현행과 같음)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림공
익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
다.

1. 산림욕장, 치유의 숲, 숲속야
영장, 산림레포츠시설, 산책로
· 탐방로 · 등산로 · 둘레길 등
숲길 및 전망대(정자를 포함
한다)

2. ~ 4. (생략)

③ ~ ⑧ (생략)

⑨법 제12조제1항제1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 6. (생략)

<신설>

⑩ ~ ⑫ (생략)

⑬법 제12조제1항제1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행위를 말한다.

1. ~ 4. (생략)

5. 농림어업인등 또는 「임업

--.

1. -----

----- 포함
한다), 숲경영체험림

2. ~ 4. (현행과 같음)

③ ~ ⑧ (현행과 같음)

⑨-----

-----.

1. ~ 6. (현행과 같음)

7. 「도서관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국립도서관 또는 공립도
서관

⑩ ~ ⑫ (현행과 같음)

⑬-----

-----.

1. ~ 4. (현행과 같음)

5. -----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9조의2에 따른 한국 임업진흥원(이하 “한국임업진흥원”이라 한다)이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른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관상수는 제외한다)을 재배(성토 또는 절토 등을 통하여 지표면으로부터 높이 또는 깊이 50센티미터 이상 형질변경을 수반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행위. 다만, 농림어업인등이 재배하는 경우에는 5만제곱미터 미만의 산지에서 재배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6. 6의2. (생략)

7. 농림어업인등이 3만제곱미터 미만의 산지에서 관상수를 재배하는 행위

8. ~ 12. (생략)

⑭ (생략)

제17조(산지전용신고) ① (생략)

② 법 제15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림공

----- 품목 -----

-----.

6. 6의2. (현행과 같음)

<삭제>

8. ~ 12. (현행과 같음)

⑭ (현행과 같음)

제17조(산지전용신고) ① (현행과 같음)

② -----

익시설과 그 부대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2. (생략) 3.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제5호·제8호 및 제9호에 따른 산림욕장, 치유의 숲, 숲속야영장, <u>산림레포츠시설</u> 및 그 부대시설 4. 5. (생략) ③ (생략) 제18조의2(산지일시사용허가) ① (생략) ② 법 제15조의2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를 말한다. 1. <u>배전시설·전기통신송신시설·풍력발전시설</u> 및 풍황계측시설의 설치 2. ~ 4. (생략) ③ (생략) 제18조의4(산지일시사용기간) ① · ② (생략) ③ 제2항에 따라 준용하는 제19	----- -----. 1. 2. (현행과 같음) 3. ----- -- <u>제2조제3호·제5호·제8호·제9호 및 제10호</u>----- ----- <u>산림레포츠시설, 숲경영체험림</u> -- ----- 4. 5.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제18조의2(산지일시사용허가) ① (현행과 같음) ② ----- ----- -----. 1. <u>배전시설·전기통신송신시설·풍력발전시설(진입로를 포함한다.)</u> ----- -- 2. ~ 4.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제18조의4(산지일시사용기간)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	---

조제2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광업법」에 따른 광물의 채굴
을 위한 산지일시사용기간을 연
장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최
초의 산지일시사용기간을 초과
하여 산지일시사용기간의 연장
허가를 할 수 있다.

1. 「광업법」에 따른 광물의
채굴을 위하여 산지일시사용
기간을 연장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것

<신 설>

2. 최초의 산지일시사용기간, 기
존의 산지일시사용연장기간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

-----.

1. -----

----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다
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

가. 「광업법」에 따른 광물
의 채굴을 위하여 산지일
시사용기간을 연장함이 타
당하다고 인정될 것

나. 최초의 산지일시사용기
간, 기존의 산지일시사용
연장기간과 연장받으려는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광업법」 제12조에 따른
채굴권의 존속기간을 초과
하지 아니할 것

2.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연장받으려는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광업법」 제12조에 따른 채굴권의 존속기간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④ (생략)

제21조(대체산림자원조성비) ① (생략)

②산림청장등은 법 제19조제2항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다른 풍력발전시설(풍력발전시설을 위한 진입로를 포함한다.)을 위한 산지일시사용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
가. 기간연장의 타당성에 관하여 법 제22조에 따른 중앙산지관리위원회 또는 지방산지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칠 것

1) 산림청 소관 국유림의 산지 : 중앙산지관리위원회

2) 1) 외의 산지 : 지방산지관리위원회

나. 연장을 받으려는 기간은 최초의 산지일시사용기간, 기존의 산지일시사용연장기간과 연장받으려는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30년을 초과하지 않을 것

④ (현행과 같음)

제21조(대체산림자원조성비) ① (현행과 같음)

②-----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일시에 납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보증금을 예치하게 한 후 4년 이내의 기간동안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1. ~ 5. (생략)

6. 법 제19조제8항에 따라 산출한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총납부금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

제27조(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사항) 법 제22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 7. (생략)

<신설>

8. ~ 11. (생략)

제29조의2(중앙산지관리위원회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효율적

-----.

1. ~ 5. (현행과 같음)

6. -----
----- 1억원 -----

제27조(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사항) -----

-----.

1. ~ 7. (현행과 같음)

8. 제18조의4 제3항 제2호에 따른 산지일시사용 기간연장에 관한 사항

9. ~ 12. (현행 제8호부터 제11호까지와 같음)

제29조의2(중앙산지관리위원회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 -----

인 심의를 위하여 중앙산지관리 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분과위원회 원회를 두고, 그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 략) 2. 제2분과위원회 가. 삭 제 나. ~ 아. (생 략) <신 설> 자. ~ 타. (생 략) ② ~ ⑥ (생 략) 제30조의2(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사항) 법 제22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 4의2. (생 략) <신 설> 4의3. (생 략) 5. · 6. (생 략) 제31조의2(지방산지관리위원회	----- ----- ----- -----. 1. (현행과 같음) 2. ----- 나. ~ 아. (현행과 같음) 자. 제18조의4 제3항 제2호에 따른 산지일시사용 기간연장에 관한 사항 차. ~ 파. (현행 자목부터 타목까지와 같음)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30조의2(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사항) ----- ----- ----- -----. 1. ~ 4의2. (현행과 같음) 4의3. 제18조의4 제3항 제2호에 따른 산지일시사용 기간연장에 관한 사항 4의4. (현행 제4호의3과 같음) 5. · 6. (현행과 같음) 제31조의2(지방산지관리위원회
---	---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
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효율적
인 심의를 위하여 지방산지관리
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분과위
원회를 둘 수 있으며, 그 심의사
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 략)

2. 제2분과위원회

가. 삭 제

나. ~ 라. (생 략)

<신 설>

마. ~ 아. (생 략)

② ~ ⑥ (생 략)

제39조(채석단지의 지정) ① ~
④ (생 략)

⑤ 법 제29조제2항에서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면적”이란 채석
단지로 지정받은 면적의 100분
의 10을 말한다.

⑥ ~ ⑧ (생 략)

제46조(복구비의 예치 등) ①법
제38조제1항 단서에서 “산지 전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

-----.

1. (현행과 같음)

2. -----

나. ~ 라. (현행과 같음)

마. 제18조의4 제3항 제2호에
따른 산지일시사용 기간연
장에 관한 사항

바. ~ 자. (현행 마목부터 아
목까지와 같음)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39조(채석단지의 지정)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

-- 20을 초과함을 -----
-----.

⑥ ~ ⑧ (현행과 같음)

제46조(복구비의 예치 등) ①-----

용을 하려는 면적이 66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 6. (생략) <u><신설></u> ②·③ (생략)	----- ----- ----- ----- -----. 1. ~ 6. (현행과 같음) 7.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각 호의 공공법인이 설치하는 수목장립 ②·③ (현행과 같음)
--	---

< 의안 소관 부서명 >

산림청 산지정책과	
연 락 처	(042) 481 - 4141